

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15.7.20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 금액을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.

- 1) 법령 위반 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9조제1항 제1호	200	400	800
나.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9조제1항 제2호	200	400	800

다.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법 제29조제2항 제1호	100	200	400
라.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9조제1항 제3호	200	400	800
마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9조제2항 제2호	100	200	400